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도시가스요금의 경감대상) ①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별표 19의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가 아닌 자(이하 “사회적배려대상자”라 한다), 별표 20의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및 별표 21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피해주택(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9의 다자녀가구를 제외한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한다.

제68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금액) 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 도시가스 도소매요금,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금액은 사회복지시설이 계약한 요금과 일반용과 산업용 중 최저요금과의 단가차액을 적용한다.

③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금액은 피해주택의 피해정도에 따라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4(도시가스요금의 경감방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대상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가스요금 경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일단위로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인에 대한 자격을 확인한 후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말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감대상자 자격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지원한다.

제68조의5(도시가스요금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 대상자에 대한 도매요금 경감금액과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 대상자에 대한 소매요금 경감금액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제68조의6(도시가스요금 경감 부담수급에 대한 조치)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는 전·출입, 자격변동 및 해산·청산·지정해제 등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8조의2(도시가스요금의 경감 대상) ①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별표 19의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가 아닌 자(이하 “사회적 배려대상자”라 한다), 별표 20의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및 별표 21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피해주택(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신 설>

19의 다자녀가구를 제외한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한다.

제68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금액) 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 도시가스 도소매요금,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금액은 사회복지시설이 계약한 요금과 일반용과 산업용 중 최저요금과의 단가차액을 적용한다.

③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금액은 피해주택의 피해정도에 따라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68조의4(도시가스요금의 경감

방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대상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일단위로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인에 대한 자격을 확인한 후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말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감대상자 자격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지원한다.

<신 설>

제68조의5(도시가스요금 경감액
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① 가
스도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
대상자에 대한 도매요금 경감금
액과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
요금경감 대상자에 대한 소매요
금 경감금액을 시·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신 설>

제68조의6(도시가스요금 경감 부
당수급에 대한 조치)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자는 전·출입, 자
격변동 및 해산·청산·지정해제
등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제68조의2제1항 관련)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1~3급 상이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4조)"에 따른 1~3급 장애등급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수급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다.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 라. "장애인복지법(제50조)"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8. 다자녀가구
 -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인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 (제68조의2제1항 관련)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2012.10.22)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갹생보호시설(2012.5)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2017.1)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2023.12)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 (제68조의2제1항 관련)

1. 전파 주택 :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반파 주택 :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침수 주택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 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